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기타재가급여의 대상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(안 제23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